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3 선고 2020가합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피고주식회사 B

변론 종결2020. 6. 5.

판결 선고2020. 7.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6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0. 7.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296,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3. 피고와 부천시 C, D, D 지상 E유치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6. 3. 20.부터 2016. 8. 31.까지, 계약금액 1,1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3.부터 2016. 6. 2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선급금 15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자금난으로 2016. 8. 초순경 중단되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9. 15.까지 준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6. 8. 8.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는 2016. 9. 15.까지도 준공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12. 2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을 직접 지급 및 잔금의 하도급사에 대한 직불처리 등으로 완불하였음을 원고와 피고는 확인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상회하여 하도급사에 직불처리 한 경우, 피고는 계약금액을 상회한 원고의 지급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공사 준공 후 확정된 제2항의 상회금액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말일에 상환한다. 단, 원고는 위 채권을 피고의 서면동의가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원고의 지급부분의 합의를 위하여 원고는 하도급사에 직불처리하기 전에 피고의 명시적인 직불요청서를 지급받고, 그에 따라 지급한 후 입금확인증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사가 피고에게 지급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마. 원고는 2018. 4. 9.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9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0.

7.부터 2017. 5. 18.까지 피고의 하수급인들에게 합계 572,669,532원을 직불하여

공사계약금액보다 295,669,532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295,669,5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9. 4. 5.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직불한 하도급대금 합계

539,037,500원과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900,000,000원을 합한 금원 중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

1,177,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62,03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8가합929,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10. 7.부터 2017. 5. 18.까지 피고의 하수급인들에게 합계 572,669,532원을 직불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상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에 관하여 선행사건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2017. 5. 18. 이후부터 피고의 하수급인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합계 34,000,000원, G회사(H)에 3,669,600원,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2020. 2. 10.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의 합계 40,669,600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공사는 준공기한이 2016. 8. 31.임에도 피고는 2017. 2. 21.에서야 준공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1/1,000)을 잔여공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일수 173일(2016. 9. 1.부터 2017. 2. 21.까지)에 대하여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203,621,000원[= 총 공사계약금액 1,177,000,000원 × 지체상금율 1/1,000 × 지체일수 173일(2016. 9. 1.부터 2017. 2. 21.까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선행사건에서도 공사대금을 직불하였다고 인정된 이 사건 공사 하수급인들인 F, H(G회사), I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669,600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2. H(G회사)에게 송금한 돈은 1,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669,6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다].

F	2018. 3. 30.	2,000,000
2018. 4. 30.	2,000,000	
2018. 5. 30.	2,000,000	

F	2018. 3. 30.	2,000,000
2018. 7. 2.	2,000,000	
2018. 7. 31.	2,000,000	
2018. 9. 3.	2,000,000	
2018. 9. 30.	2,000,000	
2018. 11. 1.	2,000,000	
2018. 12. 31.	2,000,000	
2019. 3. 29.	2,000,000	
2019. 6. 3.	2,000,000	
2019. 8. 4.	2,000,000	
2019. 9. 2.	2,000,000	
2019. 10. 1.	2,000,000	
2019. 11. 1.	2,000,000	
2019. 12. 2.	2,000,000	
2019. 12. 31.	2,000,000	
소계	34,000,000	
H(G회사)	2018. 3. 30.	1,000,000
2018. 4. 30.	1,000,000	
2018. 5. 30.	1,000,000	
2018. 7. 2.	669,600	
소계	3,669,600	
I	2017. 6. 30.	3,000,000
합계	40,669,600	

2)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의 하수급인에게 직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② 원고는 피고와 하수급인들인 F, H(G회사), I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이고, 선행사건에서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공사대금을 직불한 것으로 인정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소는 원고가 2017. 5. 18. 이후 하수급인들인 F, H(G회사), I에게 추가로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인바, 원고가 위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돈을 추가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하수급인들인 F, H(G회사), I에게 직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위 40,669,600원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40,66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체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지체상금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계약 일반조건 제30조 제1항에서 피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에게 계약서로 정한 지체상금율을 잔여공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지체상금율을 일당 1/1,000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공사계약상 준공예정일인 2016. 8.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2017. 2. 21. 부천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체상금의 시기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기간을 2016. 3. 20.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위 2016. 8. 31.이므로, 지체상금의 시기는 그 다음날인 2016. 9. 1.이 된다.

3) 지체상금의 종기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의 종기는 위 공사의 완공일로 보아야 하는바, 2017. 2. 21.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부천시장의 사용승인이 있었고, 달리 이에 앞서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사용승인일인 2017. 2. 21.을 지체상금의 종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잔여공사금액 원고는 지체상금을 청구하면서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계약 일반조건 제30조 제1항에서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잔여공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잔여공사금액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준공예정일을 도과한 2016. 9. 1.경 기준으로 한 잔여공사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 1,177,000,000원 중 원고가 2016. 8. 8.경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돈 합계 900,000,000원을 제외한 277,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잔여공사금액이 위 돈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잔여공사금액은 277,000,000원으로 본다.

5) 지체상금의 계산 준공예정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사용승인일인 2017. 2. 21.까지 174일 동안 지체기간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은 48,198,000원(= 277,000,000원 × 1/1,000 × 174일)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8,867,600원(= 부당이득금 40,669,600원 + 지체상금 48,1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28.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성수

판사하성우

판사임한아